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

■ 정성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260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정성호의원 등 11인
2. 발의연월일: 2024. 7. 1.
3. 회부연월일: 2024. 7.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립학교의 교원과 동일하게 교원자격을 보유하고 유사한 성격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공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모든 징계의결 요구에 대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한 현행법 규정이 형평성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사유를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하여 사립학교 및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Ⅲ. 검토의견

□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 강화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직위해제 요건을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에서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개정하여,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현행	개정안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①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u>	2. <u>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u> ----- -----
3.·4. (생략)	3.·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현행 「사립학교법」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르면 임용권자는 사립 학교 교원이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음.

그러나 국·공립학교 교원의 경우 임용권자는 「교육공무원법」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교원이 파면, 해임, 강등,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 교원의 직위를 해제할 수 있음.

현행 법령에서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구분되며,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은 ‘중징계’, 감봉,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되는데,¹⁾

임용권자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 중징계 또는 경징계에 해당하는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나,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직위를 해제할 수 있으므로,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교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됨.

이에 개정안은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관련 직위해제 사유를 국·공립 학교 교원의 사유와 동일하게 ‘중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

1) 「사립학교법」 (사립학교 교원)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②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 결과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교원의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제62조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제5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해당 교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교육공무원징계령」 (국·공립학교 교원)

제1조의2(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징계”라 함은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을 말한다.

2. “경징계”라 함은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한다.

하여 교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 하려는 것임.

[표 1]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상 징계 관련 직위해제 요건 비교

구분	사립학교법(제58조의2제1항제2호)	교육공무원법(제44조의2제1항제2호)
직위해제 요건 중 징계 관련 부분	•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 경징계: 감봉, 견책	•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료: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사립학교법」의 징계 관련 직위해제 조항은, 교원 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정안의 취지를 고려하여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해 적용되는 「교육공무원법」과 비교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음.

[표 2]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관련 직위해제 요건 개정 내역

구분	최초	1차 개정	2차 개정	3차 개정
사립학교법	법률 제2775호, §58의2 1975.7.23. 개정 공포일 시행 • 교육공무원법 §51의2①~④ 준용	법률 제3458호, §58의2 1981.11.23. 개정 1982. 1. 4. 시행 • 인용조문 변경 : 국가공무원법 §73의2 준용	법률 제4226호, §58의2 1990.4.7. 개정 공포일 시행 • 직위해제 내용 규정 - 직위해제 요건 : 징계의결 요구 중	(직위해제 요건 : 징계의결 요구 중)
교육공무원법	법률 제1775호, §51의2 1966.4.2. 개정 공포일 시행 • 직위해제 요건 : 징계의결 요구 - 파면, 감봉, 견책	법률 제3458호 1981.11.23. 개정 1982. 1. 4. 시행 • 직위해제 조항 삭제 : 국가공무원법 §73의2 적용	(국가공무원법 §73의2 적용)	법률 제18455호, §44의2 2021. 9.24. 개정 2022.12.25. 시행 • 직위해제 조항 신설 : 중징계의결 요구 중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국가공무원법	법률 제1711호, §73의2 1965.10.20. 개정 공포일 시행 • 직위해제 요건 : 징계의결 요구 중 - 파면, 감봉, 견책	법률 제3447호, §73의2 1981.4.20. 개정 1981.5.31. 시행 • 징계종류 변경 : 징계의결 요구 중 -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법률 제6622호, §73의2 2002.1.19. 개정 공포일 시행 • 직위해제 요건 개정 : 중징계의결 요구 중 - 파면, 해임, 정직	법률 제10148호, §73의3 2010.3.22. 개정 공포일 시행 • 징계종류 변경 : 중징계의결 요구 중 -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자료: 「사립학교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중 해당 조항 정리

(최초)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직위해제 제도는 1975년에 신설되었으며, 당시 직위해제 요건은 「교육공무원법」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되어 ‘징계의결 요구’된 자가 적용되었고, 징계의 종류는 ‘파면, 감봉, 견책’이었음.

(1차 개정) 1981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교육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을 적용²⁾받게 됨에 따라, 「교육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조항이 삭제되었고, 「사립학교법」도 「국가공무원법」의 내용을 준용하도록 개정되었으며, 징계의 종류로 ‘해임, 정직’이 추가됨.

(2차 개정) 1990년 개정된 「사립학교법」은 직위해제와 관련하여 준용 조항으로 표기하지 않고 ‘징계의결 요구 중’의 내용을 직접 규정하였으나, 2002년 「국가공무원법」의 직위해제 요건은 ‘중징계의결 요구 중’으로 개정되었고, 「교육공무원법」에도 해당 조항이 적용됨.

(3차 개정) 2010년에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중징계 종류에

2) 「국가공무원법」(법률 제3447호로 개정되기 전)

제2조 (별정직과 일반직) ① 공무원은 이를 별정직과 일반직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별정직으로 한다.

6. 법관·검사, 교육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군인·군속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별정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정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공무원법」(법률 제3447호, 1981.4.20. 일부개정, 1981.5.31. 시행)

제2조 (공무원의 구분) ① 공무원은 이를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라 함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토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2. 특정직공무원 :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의 규정은 제5장 보수 및 제7장 복무의 규정을 제외하고 이 법 기타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특수경력직공무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65조와 제6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강등’이 추가되었고, 2021년 직위해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교육공무원법」에도 해당 내용이 반영되었음.

그러나 「사립학교법」은 중징계 및 경징계를 모두 포함한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위를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내용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음.³⁾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사립학교법」의 징계 관련 직위해제 요건을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로 규정할 경우, 모든 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직위해제가 가능하던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에 한하여 직위해제가 가능하도록 변경되므로,

해당 법률이 적용되는 사립학교 교원과 「교육공무원법」이 적용되는 국·공립학교 교원 간의 형평성이 확보되고, 사립학교 교원이 경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 임용권자는 해당 교원에 대해 직위를 해제할 수 없게 되어 교원의 신분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다만,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 등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의 사법상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으므로 학교법인과 교원은 원칙적으로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며,

3) 「사립학교법」은 2020년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에서 ‘2. 징계의결이 요구 중인 경우’로 개정된 바 있음.
(「사립학교법」(법률 제17659호, 2020.12.22. 일부개정, 2020.12.22. 시행))

사립학교 교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한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이들 사이의 법률관계가 사법관계임을 전제로 그 신분 등을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장한다는 취지이므로,

신분관계와 임면권자가 서로 다른 사립학교 교원과 국·공립학교 교원은 임면절차 등에서 어느 정도의 차별화가 불가피하다고 본 점⁴⁾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는 국·공·사립학교 모든 교원에 대해 징계 관련 직위해제 요건을 통일시킴으로써 교원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립학교법」의 직위해제 제도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로서의 법적 성질을 가지며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⁵⁾ 직위해제에 있어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을 강화하려는 실익과 사립학교 경영자 또는 임용권자의 학교운영에 관한 재량권이 축소되는 손실이 상충되어 이에 대한 비교형량 및 합리적 논의가 필요하므로, 법률안 개정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9

4)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헌법재판소, 95헌바29, 1997.12.24.),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10조 제3항 위헌제청(헌법재판소, 2005헌가7, 2006.2.23.)

5) 해임처분취소(대법원, 98두16613, 2000.6.9.), 위자료등(대법원, 2006다30730, 2008.6.26.)